

발사르탄(명문제약) 성분 함유 보험의약품 교환 관련 Q&A

1. 교환 일반원칙

Q1) 어떤 의약품을 교환할 수 있나요?

- 불순물 함유 우려 원료를 사용하여 급여중지된 발사르탄 성분 품목으로 2018년 8월 23일 식약처에서 발표한 의약품입니다.

Q2) 본인이 먹은 약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

- ① 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약 복약안내 확인하거나
-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'내가 먹은 약 한눈에' 서비스를 통해 확인(조제일자, 조제기간, 약품명, 투약일수 등 제공) 하거나
- ③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
Q3)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요?

- 과거에 약을 직접 처방·조제 받은 의원·병원, 약국에 가서야 교환이 가능합니다.

Q4) 환자는 문제의약품 교환 시 비용을 지불해야 하나요?

- 기존에 처방받은 발사르탄 문제의약품에 대한 재처방·재조제를 통한 교환 시 1회에 한하여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.

* 단, 「2. 교환 방법 및 비용계산」 부분의 Q3~Q5의 경우에는 발생가능

Q5) 이미 복용한 의약품은 교환조치 되나요?

- 복용한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해서 교환만 가능합니다.

Q6) 약을 안 가지고 가도 새로 받을 수 있나요?

- 반드시 남아있는 약을 요양기관(약국이나 의원·병원)에 가져가야 교환할 수 있습니다.

Q7)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 교환시 복용 후 남아있는 의약품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?

- 재처방 또는 대체조제 등 교환 시 처방전 상 잔여일수 범위 안에 있는 남아 있는 의약품을 기준으로 합니다.
 - (잔여 처방일수 > 잔여 약 수) 잔여 약 수를 기준으로 교환
 - (잔여 처방일수 < 잔여 약 수) 잔여 처방일 수를 기준으로 교환

※ 다만, 환자불편이나 환자건강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잔여 처방일수 보다 많이 남아 있는 의약품 교환을 위해 재처방을 한 경우에는 향후 급여심사 과정 등에서 요양기관에 불이익이 없도록 할 예정

Q8) 교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?

- ① 종전 이용했던 의료기관에서 판매중지 대상이 아닌 타고혈압 의약품으로 다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(발사르탄 성분 외 고혈압 의약품도 가능)
- ② 또는 종전에 이용했던 약국에서 약사법 제2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동일 성분·함량·제형의 다른 품목으로 대체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Q9) 판매중지 대상이 아닌 타고혈압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또는 처방을 변경·수정하여 조제하는 경우 환자가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있나요?

- 기본적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 가격 수준의 대체 의약품으로 조제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별도의 환자부담금은 발생하

지 않습니다.

- 다만, 요양기관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처방받은 의약품보다 비싼 가격의 의약품으로 조제하게 되는 경우에는 ① 추가적인 환자부담금은 발생하지 않고, ② 요양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간 정산을 통해 조정하고자 합니다.

Q10) 이 기준은 건강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?

-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령을 준용하는 다른 제도에도 모두 적용됩니다. 다만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 등을 각 제도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2. 교환 방법 및 비용계산

Q1) 환자의 교환 후 요양기관-보험자-제약사 간 약품비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?

-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.
 - (요양기관-보험자 간) 요양기관이 별도 환수 요청은 하지 않고, 비용명세서의 특정 내역란에 발사르탄 관련임을 기재하여 새로운 조제내역을 청구하면 우선 지급하고, 향후 환수 등 정산합니다.
 - (요양기관-제약사 간) 요양기관에서 제약사에 반품을 요청하면 제약사는 요양기관에 약품비를 지급합니다.

Q2) 다시 처방받을 때 아예 새로운 처방을 받을 수도 있나요?

예를 들어, 처음에 a, b, c 세 알의 약을 30일치 탔는데, a만 10일치 교환해야하는 경우,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처방받는 건가요, 아니면 b, c도 포함해서 새로운 처방을 30일치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?

- 의사의 재처방 시 진찰료와 조제료를 면제받으려면 a를 대신할 약만 10일치 교환해야 합니다.

Q3)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의 재처방과 동시에 타 상병(예: 배탈 등)에 대한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의약품을 함께 처방이 가능한가요?

- 환자본인부담금 면제 등 금번 조치는 식약처 판매금지 의약품(불순물 함유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)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이 경우 발사르탄 관련 재처방과 타 상병의 의약품은 처방전을 분리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.
 -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.
(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, 공단부담금 청구)

Q4)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의약품 재처방시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이 가능한가요? (예: 잔여일수 5일분 처방 + 30일분 추가 처방)

- 금번 조치에 따라 교환되는 약제는 판매 금지된 의약품의 기존 처방 중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의약품입니다.
- 따라서 재처방 의약품과 동일 의약품이더라도 잔여 일수 외 추가 처방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- 만약 하나의 처방전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면제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하시면 됩니다.
(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받고, 공단부담금 청구)

Q5) 기존에 가루로 만들어 혼합한 약을 처방받은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?

- 발사르탄 문제약이 가루로 혼합되어 있는 기존 약을 교환할 경우에는 하나의 처방전을 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이 경우 발사르탄 문제의약품을 포함한 전체 의약품에 대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며,
- 진찰료, 조제료 등 행위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은 면제됩니다.

3. 기타

Q1) 종전 처방 또는 조제 받았던 요양기관이 휴업/폐업인 환자의 경우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나요?

- 요양기관이 휴업/폐업한 환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.
- 환자(보호자)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(지사)을 방문하여,
 - ① 요양기관 휴(폐업) 사실조회 확인 여부와 ② 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 재발급을 요청합니다.

※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, 고령자, 거동불편자 등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도 신청 가능

- ‘요양기관 휴(폐업) 사실조회서와 ‘이전 처방하였던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내역 청구명세서’을 가지고 원하는 요양기관에 가시면 됩니다.
- 단, 공단에서 ‘이전 처방 요양급여내역 발급’이 어려운 경우는 다음과 같이 처방 내역을 확인합니다.

- ① 이전 처방조제약 봉투에 있는 조제안내
-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(www.hira.or.kr)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 후 ‘내가 먹은 약 한눈에’ 서비스를 통해 확인(조제일자, 조제기간, 약품명, 투약일수 등 제공)
- ③ 처방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처방전 재발급 요청

- 환자가 방문한 요양기관은 환자가 공단의 휴·폐업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이전에 약을 조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동 관리기준에 따라 의약품을 교환하면 됩니다.

※ **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청구관련 Q&A는 추후 별도 안내 예정**